

8. 建築法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1990年 9月 27日

1.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가. 자연녹지지역내 아파트형 공장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축물에 사용되는 급수관은 한국 공업규격표시품인 수도용 K.S관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다. 지하층 설치 의무 면제공장을 상공 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장으로 함.

라. 배연설비의 설치기준을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2.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 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